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5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3.

발 의 자: 김주영・이학영・문정복

김태선 • 안호영 • 박홍배

박 정・강득구・박정현

박상혁 • 박균택 • 유종군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,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,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
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 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 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 2월 31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-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 2026년 12월 31일-----(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에서 같다)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(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 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생 략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제118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 제1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) ① ---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

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<u>2024년 12월 31</u>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<u>2026년 12월 31일</u> -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